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37호 2015. 12. 11.(금)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5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58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6호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6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 -----	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73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75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80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81

⇒ 뒷면 계속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82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90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8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일부개정예규 ----- 9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6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을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을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책임하에”를 “책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산하기관”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한다.

제3조 중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이 정한 바에”를 “법령에”로, “소관사무중”

을 “소관사무 중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조사등”을 “통계조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을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으로,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을 “인천광역시시장 위임사무는 인천광역시시장”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를 “구 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이행등”을 “이행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정될때에는”을 “인정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각각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변명서 등 관계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0조 규정에

서 정한 바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92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920</u>	-				
3급	1	1				
4급	6	4	1	1		
5급	<u>59</u>	<u>30</u>	2	6	1	20
6급 이하 계	854	-				
별정직 계	<u>2</u>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계	<u>2</u>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을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제5조제5항 관련)

회원번호		신청일	
------	--	-----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p>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 신청인 : (인)</p> <p>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p>			

210mm×297mm

[별지 제3호서식]

위험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제한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사용가능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

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的人数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심의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나.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

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지 곤란한 경우는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
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
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
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제30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
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
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
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토지]대부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대부를 받은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토지.건물]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토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 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
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
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
른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그 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

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기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라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임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

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의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의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은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공유재산관리대장(9-4)

CODE NO :

(임 목 족)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주 산	부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수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분)주				
식 재 상 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연일일		연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임대년월일		전소유자		변동사항			
임대기간		등기년월일		관 리 청			
		등기번호					
		등기목적		가 액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5)

CODE NO :

(선 박)

회 계 명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확 인	비 고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주요설비및속구 명 칭	개 수	용 도	깊 이	m	향해구역	
		선적항	넓 이	m	최대탑승 인원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6)

Code No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종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공유재산관리대장(9-7)

Code No

(특허권·기타권리)

회 계 명 : 명 칭 :

작성 자		확 인	
---------	--	--------	--

재 산 관 리 관			연 월 일	방 법	금 액	소 유 자	부 속 서 류		연 혁
종 목		취 득							
등 록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 서 대 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 재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 는 평 가 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 수 자 주 소	성 명	내 용	대 부 기 간	대 부 료	기 록	대 조	비 고
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9-8)

Code No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작성 자		확 인	
---------	--	--------	--

회 계 명 :

주식 등 종 류						법 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채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공유재산관리대장(9-9)

Code No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수 탁 자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제1항”을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을 “녹색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단체”를 “민간단체, 사업장, 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주택, 마을, 학교, 기관 등에 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등에 기여
2.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및 감축실적 우수
3. 자원 절약,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참여 및 추진실적 우수

제11조제2항 중 “일반교양교육”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교양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구민대표, 여성 등에 대하여”를 “공무원 및 관내 주민 등에게”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이를 구"를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제9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 확산)”을 “(녹색제품 구매 확산)”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육성을 위하여”를 “육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제26조의4”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조의2의 규정”을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8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활사업

제6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하고,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선양사업 운영”을 “선양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문화탐방 활동지원
3.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4.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운영지원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호의 “영 제26조의 4”를 “영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1조의 규

정에 따른 자활공동체”를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한다.

제19조 중 “제18조의 규정”을 “제18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퍼센트”를 “1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에 관하여”를 “지원에”로 한다.

제2조 중 “서구”를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및 계기행사와 명절”을 “및 계기행사”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보훈청장”을 “인천보훈지청장”으로, “또는 관련단체”를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전화번호 :)				
	사망일자	년	월	일	사망신고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1~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 사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전화번호 :)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대 리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신 청 인 제출서류	1.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1. 주민등록 등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p>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6호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출산입양축하금은 명시이월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로 하고,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공공시설에”를 “공공시설 내에”로 하고, “조례가 정한바에 의한다”를 “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등에게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하는”을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로, “장과 그 투자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에”를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로, “반회보, 구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를 “Green 서구,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4조 중 “구 관내 거주자로서”를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를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한 다”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제1항 중 “장과 그 투자기관의 장이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장이 제4조에 따른”으로, “장애인등에게 계약하도록”를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으로, “장애인등 2인이상”을 “장애인 등 2명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는 당

해”를 “추첨으로 하며, 그 이외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간내”를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받은자는”을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받은 자는”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해당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② 삭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 관련)

순 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 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 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69세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 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5인”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행정담당으로 한다.”를 “1명을 두며,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사항”을 “사항. 다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시설의 공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장 및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하고, “3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를 “두 번까지만”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번까지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제1항 중 “보육전문교원”을 “보육전문교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서구의회 의장이”를 “서구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번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의 제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보 건 지 소	출장소	동
총 계		923	606	18	45	16	43	195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20	603	18	45	16	43	195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4	1	1	0	0	0
지방서기관		2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59	30	2	5	1	1	20
지방행정사무관		31	15	2				14
지방의무사무관		4			3	1		
지방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6	4					2
지방행정·보건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4	4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농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6급 소계		209	161	4	10	4	8	22
지방행정주사		100	79	3			1	17
지방세무주사		7	7					
지방전산주사		1	1					
지방사회복지주사		6	6					
지방공업주사		6	6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4	4					
지방보건주사	3	3					
지방의료기술주사	2			2			
지방간호주사	4			3	1		
지방환경주사	6	6					
지방시설주사	18	16				2	
지방방송통신주사	1	1					
지방운전주사	5	3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7	4					3
지방행정·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3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8	8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	1	1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1				1	
지방행정·농업·세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2	2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3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주사	1			1			
7급 소계	312	209	6	15	6	20	56
지방행정주사보	108	65	3			2	38
지방세무주사보	29	23				6	
지방전산주사보	4	4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6	21					5
지방속기주사보	2		2				
지방공업주사보	10	9				1	
지방농업주사보	2	1				1	
지방녹지주사보	5	5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17	11		4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4			3	1		
지방간호주사보	6			5	1		
지방환경주사보	11	11					
지방시설주사보	41	36				5	
지방방재안전주사보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3					
지방운전주사보	17	3		1		1	12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1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2					
지방사무운영주사보	9	5	1			2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6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주사보	2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2		
8급 소계	263	164	4	13	4	13	65
지방행정서기	112	71	2	1			38
지방세무서기	13	10				3	
지방전산서기	3	3					
지방사회복지서기	35	17					18
지방공업서기	5	5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복지서기	3	3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서기	9	5		2		2	
지방의료기술서기	1				1		
지방간호서기	6			4	2		
지방환경서기	10	10					
지방시설서기	32	26				6	
지방방송통신서기	3	3					
지방운전서기	12	2	1	1		1	7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3	1	1	1			
지방행정·전산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3	2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보건·공업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1				1		
지방환경·공업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3			
9급 소계	70	34	1	1	1	1	32
지방행정서기보	34	12	1				21
지방세무서기보	4	3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0	8		1			11
지방공업서기보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4	4					
지방사무운영서기보	2	2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별정직 계	2	2	0	0	0	0	0
5급상당 소계	0	0	0			0	0
일반비서	0	0					
6급상당 소계	1	1					
일반비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9급상당 소계	0	0					
일반비서	0	0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초계약일	비고

2. 근로계약기간 :

3.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 : 변경시 노사협의에의함)

○ 근로시간 : 시부터 시까지(1일 시간)

※ 휴게시간 :

4.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 근무장소 및 부서 :

○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5. 임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 기타수당 (등)

○ 임금지급일 : 매 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6.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사용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인)

(근로자) ○○○○ 근로자 : ○ ○ ○(인)

[별지 제9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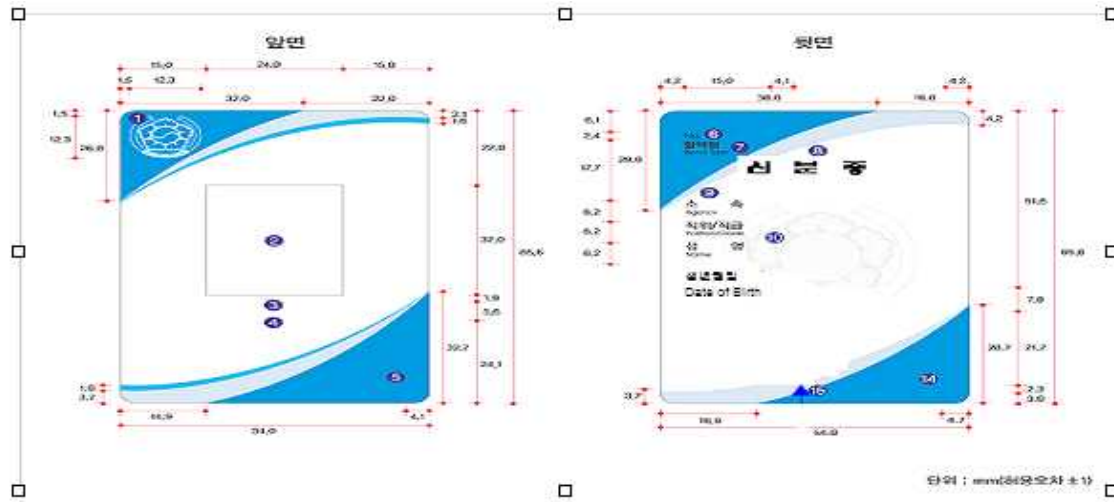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제14조 관련)

소 속				일 용 직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 및 관계		의 ()	
주 소				전 화	자택 :		
				특기		취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일일단가	월평균임금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별지 제10호서식]

신분증 (제15조 관련)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전면)

(후면)

7.3 cm	신 분 증
	(사 진)
	(일 련 번 호)
	(성 명)
	인천광역시서구
5.3cm	

소 속 :
사 업 명 :
성 명 :
생년월일 :
고용기간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 에 넣어주시기 바랍 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제16조 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소				
	소속				
	직명				
	재직기간	:	:	.부터 .까지(년 월)
용도					
<p>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급별 내역
합계			923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920	
		3급	1	행정 1
		4급	6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2
		5급	59	행정 31, 의무 4, 시설 2, 행정·사회복지 6, 행정·보건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행정·녹지 1, 행정·공업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환경·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6급	209	행정 100, 세무 7, 전산 1, 사회복지 6, 공업 6, 농업 1, 녹지 4, 보건 3, 의료기술 2, 간호 4, 환경 6, 시설 18, 방송통신 1, 운전 5, 기계운영 1, 행정·세무 4, 행정·사회복지 7, 행정·공업 2, 행정·농업 2, 행정·보건 3, 행정·환경 2, 행정·시설 8,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녹지·시설 1, 간호·의료기술 1, 행정·공업·시설 2, 행정·농업·세무 1, 행정·보건·간호 1, 행정·보건·환경 2, 보건·간호·의료기술 4,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7급	312	행정 108, 세무 29, 전산 4, 사회복지 26, 속기 2, 공업 10, 농업 2, 녹지 5, 수의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6, 환경 11, 시설 4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7, 전화상담운영 1, 전기운영 1, 기계운영 2, 사무운영 9, 행정·사회복지 6, 보건·간호 1, 수의·농업 1, 의료기술·식품위생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8급	263	행정 112, 세무 13, 전산 3, 사회복지 35, 공업 5, 농업 1, 녹지 3, 해양수산 1, 보건 9, 의료기술 1, 간호 6, 환경 10, 시설 32, 방송통신 3, 운전 12,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3,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3, 행정·농업 1, 보건·공업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1, 환경·공업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9급	70	행정 34, 세무 4, 사회복지 20, 공업 1, 녹지 1, 보건 1, 환경 2, 시설 4, 사무운영 2, 행정·환경 1
	별정직	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구분청	계		606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603	
3급		1	행정 1	

		4급	4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2
		5급	30	행정 15, 시설 2,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행정·녹지 1, 행정·공업 1, 행정·공업·농업 1
		6급	161	행정 79, 세무 7, 전산 1, 사회복지 6, 공업 6, 농업 1, 녹지 4, 보건 3, 환경 6, 시설 16, 방송통신 1, 운전 3, 기계운영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시설 8,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녹지·시설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2
		7급	209	행정 65, 세무 23, 전산 4, 사회복지 21, 공업 9, 농업 1, 녹지 5, 수의 1, 보건 11, 환경 11, 시설 36,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3,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2, 사무운영 5, 행정·사회복지 6, 수의·농업 1
		8급	164	행정 71, 세무 10, 전산 3, 사회복지 17, 공업 5, 농업 1, 녹지 3, 해양수산 1, 보건 5, 환경 10, 시설 26, 방송통신 3, 운전 2,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2, 보건·공업 1
		9급	34	행정 12, 세무 3, 사회복지 8, 공업 1, 녹지 1, 환경 2, 시설 4, 사무운영 2, 행정·환경 1
	별정직	소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의회 사무국	일반직	소계	18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4	행정 3, 운전 1
		7급	6	행정 3, 속기 2,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2, 운전 1, 사무운영 1
		9급	1	행정 1
보건소	일반직	소계	61	
		4급	1	기술 1
		5급	6	의무4,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6급	14	의료기술2, 간호4, 간호·의료기술 1, 행정·보건·간호 1, 보건·간호·의료기술4,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7급	21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6, 운전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8급	17	행정 1,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6, 운전 1, 사무운영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9급	2	사회복지 1, 보건 1
출장소	일반직	계	43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8	행정 1, 시설 2, 행정·세무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세무 1

		7급	20	행정 2, 세무 6, 공업 1, 농업 1, 보건 1, 시설 5, 운전 1, 전기운영 1, 사무운영 2
		8급	13	세무 3, 보건 2, 시설 6, 운전 1, 환경·공업 1
		9급	1	세무 1
동	일반직	계	195	
		5급	20	행정 14, 행정·사회복지 2, 행정·보건 1, 행정·공업·농업 1, 행정·환경·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6급	22	행정 17, 운전 1, 행정·사회복지 3, 행정·농업 1
		7급	56	행정 38, 사회복지 5, 운전 12, 사무운영 1
		8급	65	행정 38, 사회복지 18, 운전 7, 행정·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9급	32	행정 21, 사회복지 11

[별표 2]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606		
기획 예산실	일반직	소계	28		
		5급	1	행정 1	
		6급	9	행정 6, 시설 2, 방송통신 1	
		7급	12	행정 8, 방송통신 3, 전화상담운영 1	
		8급	6	행정 2, 시설 1, 방송통신 2, 전화상담운영 1	
안전 총괄실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3, 공업 1,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7급	6	행정 2, 시설 1, 환경 1, 공업 1, 방재안전 1	
		8급	2	시설 1, 방송통신 1	
		9급	1	행정 1	
감사실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3	행정 3	
		7급	5	행정 3, 시설 2	
총무과		계	30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27	
			3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8
			7급	6	행정 5, 운전 1
			8급	9	행정 8, 운전 1
	별정직		소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홍보 미디어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5	행정 1, 전산 4
		8급	5	행정 3, 전산 2
재무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4, 운전 2
		7급	6	행정 3, 운전 2, 사무운영 1
		8급	3	행정 2, 행정·전산 1
		9급	1	행정 1
세무1과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1, 세무 2, 행정·세무 3
		7급	10	세무 10
		8급	6	세무5, 전산1
		9급	1	행정 1
세무2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 1
		6급	5	세무 5
		7급	12	세무 12
		8급	4	세무 4
		9급	3	세무 3
민원 봉사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3	행정3
		8급	9	행정 9
		9급	2	행정 2
토지 정보과	일반직	소계	26	
		5급	1	시설1
		6급	7	행정 1, 시설 5, 행정·시설 1
		7급	9	행정 4, 시설 5
		8급	7	행정2,시설5
		9급	2	시설 2
생활 보장과	일반직	소계	35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행정 2,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2

		7급	12	행정 3, 사회복지 7, 행정·사회복지 2
		8급	12	행정5, 사회복지 6, 행정·사회복지 1
		9급	3	사회복지 3
희망 복지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1
		7급	9	행정 1, 사회복지 6, 보건 1, 행정·사회복지 1
		8급	6	사회복지 5, 행정·사회복지 1
		9급	2	사회복지 2
노인 장애인 복지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1
		7급	9	행정 2, 사회복지 4, 시설 1, 행정·사회복지 2
		8급	4	행정1,사회복지3
		9급	2	사회복지 2
여성 보육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1
		8급	6	행정 4, 사회복지 2
		9급	1	사회복지 1
인재 육성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6
		7급	3	행정 2, 시설 1
		8급	5	행정 5
문화관광 체육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4	행정 3, 사무운영 1
		8급	6	행정 6
경제 에너지과	일반직	소계	19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4	행정 2, 공업 1, 농업 1
		7급	9	행정 3, 공업 3, 농업 1, 수의 1, 수의·농업 1

		8급	4	행정 1, 농업 1, 해양수산 1, 시설 1
기업 지원과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5	행정 1, 시설 1, 공업 2, 기계운영 1
		8급	1	공업1
		9급	1	행정 1
일자리 지원과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2
		7급	3	행정 3
		8급	2	행정 2
환경 보전과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환경 1
		6급	7	환경 5, 행정·환경 2
		7급	8	환경 8
		8급	8	행정 1, 환경 6, 공업 1
위생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보건 1
		6급	5	보건 3, 행정·보건 2
		7급	8	보건 8
		8급	3	보건 2, 보건·공업 1
자원 순환과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 1
		6급	7	행정 4, 환경 1, 행정·보건·환경 2
		7급	8	행정 4, 환경 2, 보건 2
		8급	8	행정 1, 환경 4, 보건 3
건설과	일반직	소계	34	
		4급	1	기술 1
		5급	1	시설 1
		6급	9	행정 2, 시설 3, 공업 2, 운전 1, 행정·시설 1
		7급	12	행정 3, 시설 5, 공업 2,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8급	10	행정 2, 시설 5, 공업 2, 기계운영 1
		9급	1	공업1
건축과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1, 시설 4, 행정·시설 1, 기계운영 1
		7급	9	사회복지 1, 시설 7, 사무운영 1
		8급	9	행정 1, 사회복지 1, 시설 6, 운전 1
		9급	1	사무운영 1
도시개발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2, 시설 2,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7급	10	행정 2, 시설 8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1	시설 1
도시재생 경관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3, 행정·시설2
		7급	4	시설 4
		8급	5	행정 1, 시설 3, 사무운영 1
		9급	1	행정 1
공원 녹지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녹지 1
		6급	5	녹지 4, 행정·녹지 1
		7급	6	녹지 5, 사무운영 1
		8급	3	녹지 3
		9급	3	시설 1, 녹지 1, 사무운영 1
주차 관리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2	행정 1, 시설 1
		8급	5	행정 4, 시설 1
		9급	1	행정 1
교통 민원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5, 행정·공업 1
		7급	7	행정 5, 세무 1, 공업 1
		8급	11	행정 9, 세무 1, 공업 1
		9급	4	행정 4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8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일부개정예규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의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6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2.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16.1.1.시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대표이사 생년월일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560-4901, 팩스 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16.1.1.시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6조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대표이사 생년월일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은”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구 청장”을 “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기일내에”를 “지정기일 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일전에”를 “15일 전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중에”를 “사용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원상복구전에”를 “원상복구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로부터 20일이내”를 “철거일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을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각호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년”을 “해당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기일내에”를 “지정기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30일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제2항에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2월전에”를 “2개월 전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5%”를 “15퍼센트”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위탁신청서

1. 시설명 :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명		법인구분	시설(), 지원()
허가기관		허가일자	
허가번호		법인목적사업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법인 현소재지			
채정상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사회복지사업 실적	노인복지(○년○월), 영유아보육(○년○월), 아동복지(○년○월), 장애인복지(○년○월) 모자복지(○년○월), 정신보건(○년○월), 부랑아복지(○년○월), 사회복지관(○년○월)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에</u> ----- ----- -----.</p>
<p>제2조(복지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u>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u> 복지시설을 운영한다.</p> <p>1. 2. (생략)</p> <p>3. <u>기타 구청장이</u>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제2조(복지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u>은 ----- ----- ----- <u>제2조에 따른</u> ----- ----- <u>각 호의</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p>
<p>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구청은 조례 제4조에 <u>의하여</u>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의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사용자는 사용료를 <u>지정기일</u> 내에 구금고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제1호</u></p>	<p>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 <u>따라</u> ----- ----- -----.</p> <p>②----- <u>지정기일</u> ----- ----- -----.</p>

내지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생략)
3. 허가 사용일 30일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4. 허가 사용일 15일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①사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는 원상복구전에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50퍼센트-----.

1. ----- 그 밖의 -----

2. (현행과 같음)
3. ----- 30일 전에 -----

4. ----- 15일 전에 -----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①-----
----- 사용 중에 -----

-----.

②----- 제1항에 따라 -----

-----.

원상복구 전에 -----
-----.

③----- 제2항에 따른 -----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사업 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서구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적격법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등)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내에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 및 해지)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 제3조-----

 -----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②----- 제1항에 따라 -----

 ----- .

제8조(위탁협약등) ①제7조제2항에 따라 -----
 ----- 지정기일 내에 -----
 ----- .
 ②----- 협약일부터 30일 이내-----
 ----- .

제9조(연장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
 ----- 30일 전까지 -----
 ----- .
 ②----- 제6조에 따라 -----

탁자가 수탁해지를 희망할 경우 위탁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 2월전에 수탁자에게 위탁협약해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임대기간은 구청장과 협약한 수탁기간 범위내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정과 사용료 납기

-----.

③----- 및 제2항에 따라 -----

----- 30일 이내-----
-----.

④----- 제7조에 따라 -----

----- 2개월 전에 -----
-----.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

-----.

----- 범위 -----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 범위-----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임대기간 연장 허가는 반드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는 납기 익일부터 일할계산하되, 납부 전일까지 연리 1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따른 -----

----- 15퍼
센트-----.

제11조(준용) -----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

관계법령 발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